

풍수해보험(주택)

I 풍수해보험이란?

- 주거 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 및 일반인의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
- 시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진형 재난 관리제도.
- 대상재해 :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지진
- 대상시설 : 주택(동산 포함)
 - 주택: 『건축법』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
- 보험기간 : 1년(주기적인 재가입 필요)
- 보험상품 : 단체계약(상품Ⅱ, 주택·세입자 동산)
- 보장내용 : 풍수해보험 약관에서 정한 재해로 인해 주택(동산 포함)이 전파, 전반파, 반파, 소파, 지붕재 파손, 침수될 시, 손해를 조사하고 보험금을 지급.

II 보험료 안내

- 풍수해보험법 제7조제1항
 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
 - 보험료지원: 총 보험료의 34~92% 지원가능.
※일반인 52.5~92%, 차상위 75~92%, 기초생활수급자 86.2~92%
 - 현재 우리시에서는 도비 30%, 시비 70% 비율로 차상위,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 총 보험료의 92%를 지원하고 있음.
- 추가지원 사항
 - 위 조례의 조항을 근거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풍수해 보험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며 나머지 자부담 비용(8%)을 보험사에서 추가 지원.
※취약계층이 부담해야 할 실질적 보험료 없음.

증수해보험?

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
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는
드든한 정책보험이에요!

연간 보험금 & 보험금 예시

소상공인 상가·공장
풍수해보험 가입이
가능해요!

정부 지원으로
제령한 보험
총보험료의 최대 92%까지
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

소상공인 상가·공장

34.0%
92%



자연재해가
오기 전에
미리 가입

• 기상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령 시
보험가입 제한

• 국민의 빠른 회복 지원을 위해
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
보험금 지급



보험금 지급 사례

많은 국민들이
풍수해보험 혜택으로
가족의 행복을 지켰어요!

구 분	보 험 료	보 험 금
소유자	총 액 128,480원 정부지원원 43,680원 자 부 담 84,800원	1억 원
	총 액 51,480원 정부지원원 17,500원 자 부 담 33,980원	3천만 원
세입자	총 액 17,030원 정부지원원 11,684원 자 부 담 40,810원	1억 원
	총 액 13,875원 정부지원원 13,875원 자 부 담 26,935원	3천만 원



구 분	보 험 료	보 험 금
소유자	총 액 60,190원 정부지원원 60,190원 자 부 담 116,840원	1.5억 원
	총 액 40,810원 정부지원원 13,875원 자 부 담 26,935원	3천만 원
세입자	총 액 37,900원 정부지원원 19,950원 자 부 담 18,050원	7천 2백만 원
	* 8천만 원 90% 보정 (80m) 기준	



구 분	보 험 료	보 험 금
소유자	총 액 196,350원 정부지원원 196,350원 자 부 담 177,650원	1천 62만 원
세입자	총 액 374,000원 정부지원원 196,350원 자 부 담 177,650원	1천 62만 원



구 분	보 험 료	보 험 금
소유자	총 액 1,18천만원 보장선택비교 히우스 1천m ² 전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차부담	90% 보험금 지급 가능합니다.
세입자	총 액 1,881,200원 정부지원 4,180,600원 주민부담 1,881,200원	



* 보험료는 가입 지역과 기입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며,
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차부담 보험료는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.

보상 재해 & 가입 대상

태풍이 와도, 지진이 나도
걱정 마세요!

예기치 못한
자연재해
보상

- 태풍, 호우, 흉수, 강동, 풍랑,
해일, 대설
- 지진, 지진해일 손해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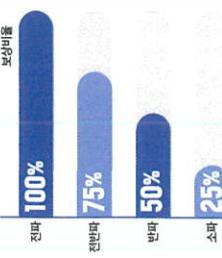


[보상 기준]

정책보상
(주택, 온실)

실손보상
(주택, 온실, 상가·공장)

보상비율



• 보상비율: 보험가입 금액 대비 보험금 비율



-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·공장,
기계·시설, 재고자산
-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과
단독주택
- 농·임업용 온실(면적제한 없음)
- 소유자, 세입자 누구나 가입 가능



태풍이 와도
지진이 나도
걱정 마세요!

풍수해보험
이
지켜 드립니다!



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합니다.
소상공인 상가·공장, 주택, 온실이 기업대상입니다.
태풍,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
소중한 재산과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.



☏ NH농협손해보험 02-2100-5107

민간
보험사에서
판매

DB손해보험 02-2100-5103
현대캐피탈재보험 02-2100-5104
삼성화재 02-2100-5105
KB손해보험 02-2100-5106

【불임 7】

풍수해보험 II (지자체단체용) 가입동의서

1. 단체보험 가입동의

- 본인은 「풍수해보험법」 및 관련규정에 의해, 본인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보험회사와 맺는 단체보험계약에 대하여 본 가입동의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함(보험료 출금이체 포함)을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 성명 (서명)

성명(피보험자)		주민등록번호	
현 거주지(우편물수령지)			
주택 소재지	(□ 상동)		
전화번호		핸드폰번호	
보험료 지원대상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초 <input type="checkbox"/> 차상위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	주택종류	<input type="checkbox"/> 단독주택 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주택
합법주택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<input type="checkbox"/> 재산세부과 대상	주택면적	(m ²) *건축물관리대장등재기준

□ 주택소유자	보험가입비율	<input type="checkbox"/> 70% <input type="checkbox"/> 80% <input type="checkbox"/> 90%	
	특약선택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산특약 <input type="checkbox"/> 소파부(不)보장특약	<input type="checkbox"/> 침수확장특약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진부(不)보장특약
□ 주택세입자	보험가입비율	<input type="checkbox"/> 90%	
	특약선택	<input type="checkbox"/> 지진부(不)보장특약	
희망보험사 선택	<input type="checkbox"/> 동부화재 <input type="checkbox"/> 현대해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삼성화재 <input type="checkbox"/> KB손해보험 <input type="checkbox"/> 농협손해보험		
보험가입기간	<input type="checkbox"/> 1년 <input type="checkbox"/> 2년 <input type="checkbox"/> 3년	가입주택 거주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실제거주 <input type="checkbox"/> 빈집
풍수해보험가입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가입 (보험회사명 , 보험종료일)		<input type="checkbox"/> 미가입 <input type="checkbox"/> 모름

보험료 납부 : 보험사는 아래 본인명의 계좌에서 정부지원분을 제외한 주민분보험료를 출금이체합니다.
주민분보험료를 납입을 위해 예금잔액을 유지해야 하며, 보험료 이체 완료후에 보장이 개시됩니다.
출금이체가 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하는 자(피보험자)와 예금주가 동일해야 합니다.

은행명	계좌번호
-----	------

2.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활용, 조회, 제공 동의서

- 본인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규정에 의해, 풍수해보험과 관련된 피보험자 개인정보의 수집·활용·처리·조회·제공에 동의합니다. (미성년자인 경우, 친권자/후견인이 서명바랍니다.)

(□친권자/후견인시) 년 월 일 성명 (서명)

□ 동의 미동의	수집·활용·처리· 조회·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	- 개인식별정보 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) - 보험계약정보 (보험사명, 증권번호, 보험기간, 보험계약일자, 상품명, 담보내용, 보험가입금액, 보험료, 계약유지여부) - 보험금지급정보 (보험사고일자, 보험금 청구일자, 지급일자, 지급액, 지급사유)
		- 제공동의일로부터 개인(신용)정보의 제공목적을 달성할 때까지
귀하는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단, 거부시 법령상 보험계약 체결이 부득이하게 거절되거나,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		
□ 동의 미동의	수집· 활용· 처리· 제공	- 보험계약의 체결·유지·관리·상담·이행, 계약적부, 보험금지급·심사, 보험사고조사 - 조사연구, 서비스 제공, 순보험요율의 산출·검증 - 보험모집질서 유지,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 제공 - 보험계약 및 보험금 청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법규 및 계약상 의무 이행 - 보험계약 관련 분쟁 대응, 고객 이력 관리
		- 손해보험협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보험계약 체결·유지·관리, 보험금지급·심사, 보험사고 조사, 고액·디수 계약자 및 피보험자 조회
□ 동의 미동의	제공 기관	① 손해보험협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(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) ② 국가기관(국민안전처, 검찰, 경찰,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금융위원회, 법원), 국민안전처가 사후관리를 위해 업무를 위탁한 자(위탁 설문조사 기관 등), 손해보험사(재보험사 포함), 귀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자(설계사·대리점 등), 계약 체결·이행 등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(보험사고조사업체, 손해사정업체, 위탁 콜센터 등)
		① 보험계약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② - 재보험, 보험 공동인수 등 - 보험모집 및 사후관리 - 사고처리 접수 및 민원접수 - 보험사고 조사,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- 순보험요율 산출 및 통계작성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보험업법이 정한 목적 -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상 업무수행

현장실사 확인자 :

(인 또는 서명)